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47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김태선 · 허 영 · 한민수
김현정 · 김영환 · 윤후덕
김주영 · 박홍배 · 박 정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규정만으로는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원청 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공정을 총괄·관리하며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책임이 건설공사도급인에 한정되어 있어,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관계수급인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뿐 아

니라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 의무를 강화하여, 고위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안 제72조 및 제175조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를 “총괄·관리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관계수급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관계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업종 또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의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3항”을 “제3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으로, “제77조제1항”을 “제6항,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u>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u>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u>건설공사도급인</u>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u>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총괄·관리하는 자가-----</u> -----. ② (현행과 같음) ③ <u>건설공사도급인·관계수급인-----</u>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⑤ 건설공사도급인·관계수급인-----

-----.

⑥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업종 또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의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

· 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 · <u>제3항</u> · 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u>제77조제1항</u>,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 ----- ----- -<u>제3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u>----- -----<u>제6항, 제77조제1항</u>----- ----- ----- -----
4. ~ 8. (생략) ⑤ ~ ⑦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